

- 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용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-

# 검 토 보 고

## 1. 제안이유

- 「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용자 조례」의 특별회계 존속기한(2023.12.31.)이 도래함에 따라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 관련 조례 명시를 통한 존속기한 연장으로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변경(안 제8조의2)
  - (현행) 2023년 12월 31일 → (개정 안) 2028년 12월 31일
-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(안 제1조, 안 제2조)

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(회계의 구분)
  - 「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○ 그 밖의

가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나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- 제외사유 : 「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 
제4조제1항제2호

다. 비용추계서 미첨부

라.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

마.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: 가결

#### 4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제9조(회계의 구분)에 의거 설치한 ‘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’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,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 연장을 조례에 명시코자 개정하는 것으로,

○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.